##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전위원회 내규

제정 2020. 3. 1 개정 2022. 2. 10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)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,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며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- 1. 한의과대학 부학장
- 2.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, 대학원 한의학과장
-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1. 대구한의대학교 교학부총장
- 2. 한의학과 동문회장 혹은 대구한의대학교 총동문회장
- 3. 한의학과 학부모 대표
- 4. 한의과대학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 2명 이상
- 6. 기타 교육, 보건 등 한의과대학 발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외부위원 2명 이상

제3조(임기)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.

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. 단, 위촉 위원이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한의과대학 한의학과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한의과대학 사명과 핵심가치에 관한 사항
- 2. 한의과대학 비전에 관한 사항
- 3. 한의과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- 4. 발전계획 추진 상황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사항
- 5. 그밖에 한의과대학 발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본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